



안전인증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 제 호
2. 기 관 명:
3. 주 소:
4. 업무수행 범위: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
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직인